

직매입 기본계약서(일반)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이하 "CJ"라 한다)과 (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직매입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CJ"와 "협력사" 간 상품의 직매입거래("CJ"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 2 조 (기본원칙)

- ① "CJ"와 "협력사"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 ② "CJ"와 "협력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 ③ "CJ"와 "협력사"는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규정 및 국제단체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④ "협력사"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력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에서 "CJ"를 면책시켜야 하며, "협력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CJ"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 ① "CJ"와 "협력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 ② "CJ"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제 4 조 (상품의 납품)

- ① "협력사"가 "CJ"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본 계약서에 이어 별도의 서면으로 체결하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협력사"는 제 1 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CJ"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협력사"는 "CJ"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④ "CJ"는 "협력사"가 상품을 납품하면 제 7 조 제 2 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CJ"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CJ"가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CJ"와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협력사”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 ⑥ “CJ”는 납품과 관련하여 “협력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협력사”가 “CJ”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CJ”는 “협력사”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제 4 조의 2 (세금계산서)

-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협력사”가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정된 경우에는 우선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순 거래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세금계산서를 월 1 회 발행하는 경우 “협력사”는 거래 익월 10 일까지 “CJ”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상품의 인도 및 검사)

- ① “협력사”는 “CJ”가 주문한 상품을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고하여야 한다
- ② “협력사”는 “CJ”가 지정한 BARCODE STICKER, 디자인 TAG, 상품설명서,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상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③ “CJ”는 “협력사”가 입고한 상품을 “CJ”의 품질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단, “CJ”가 상품을 검사하였다는 이유로 “CJ”에 대한 “협력사”의 어떠한 하자담보책임이나 법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 ④ “협력사”는 공급상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CJ”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J”는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하고 그 소요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하거나 “협력사”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⑤ 품질과 관련하여 “CJ”와 “협력사”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 2 (상품의 확인)

- ① “CJ”는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본 항에 따라 샘플을 수령한 경우 샘플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확인 시 소모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CJ”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판매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 또는 동종 유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판매가로 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등의 목적으로 “CJ”의 요청 시 “협력사”는 이에 필요한 판매상품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포장 조건)

“협력사”는 상품을 즉시 배송가능한 상태로 포장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CJ”는 입고상품이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고를 거절하거나 “협력사”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배송일시가 급박하여 “CJ”가 재포장하여야 하는 경우 “CJ”는 “CJ”의 비용으로 먼저 포장한 후 “협력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품대금에서 포장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 7 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 ① “협력사”는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CJ”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 ② “CJ”는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협력사”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 ③ “CJ”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사”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CJ”에게 제출한다.

- ④ 제 3 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다만 제 3 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J”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협력사”가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CJ”는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 ① “CJ”는 납품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 납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② “CJ”는 “협력사”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CJ”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협력사”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수·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CJ”가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 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CJ”는 “협력사”와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CJ”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협력사”가 “C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CJ”는 공제 내역이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을 아래 양식에 따라 “협력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제 항목 양식 : 명칭, 종류, 통지시기, 통지내용

*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공휴일 등으로 인한 정산 작업 지연 시에는 이에 대해 별도 통지 또는 협의하여야 함

- ⑤ 제 4 항에 따른 통지에서 “협력사”가 요청하는 경우 “CJ”는 지체없이 “협력사”에게 공제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및 추가 자료(공제 항목별 계산 방법, 적용 기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 4 항에 따른 통지 및 제 5 항에 따른 증빙서류 및 추가자료 제공은 “CJ”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협력사”에게 통지할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통지 내용 열람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CJ”는 “협력사”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시장상황 및 “협력사”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결제 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비용은 “CJ”가 정한다.
- ⑧ “협력사”는 전항의 선지급과 별도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결제 예정일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CJ”는 시장상황 및 “협력사”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참작하여 요청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

- ① “협력사”는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CJ”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서상 “협력사”가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예시: 납품 가격은 이 결정한다.)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경우 이 조항 제외 가능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 ② “CJ”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협력사”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CJ”와 “협력사”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CJ”는 계약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협력사”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CJ”와 “협력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④ “CJ”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CJ”와 “협력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CJ” 또는 “협력사”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 9 조 (납기 준수)

- ① “협력사”는 “CJ”와 합의한 제 4 조 제 2 항 상의 납기를 지켜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전항의 납기를 넘어 상품 등을 납품하는 경우, 지연 1 일당 해당 상품 등의 매입대금(매입가격에 주문수량을 곱한 값을 말한다, 각기 부가세는 별도임)의 1%를 “CJ”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 손해배상금이 매입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 ③ “협력사”가 재고부족,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해당 상품 등을 납품하지 못함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위 해당상품의 매입대금의 5%를 “CJ”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납기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상품정보 및 관련자료 등의 제공)

- ① “협력사”는 “CJ”가 방송제작 및 카탈로그제작, 인터넷 판매, 품질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와 상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CJ”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협력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자료 및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정보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는 모두 “협력사”의 책임으로 한다.
- ③ 해외수입상품에 대하여 “협력사”는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 증빙을 “CJ”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련법규 준수)

- ① “협력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CJ”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기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된 모든 법규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CJ”와 “협력사”는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규정 및 국제단체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③ “협력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력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에서 “CJ”를 면책 시켜야 하며, “협력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CJ”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하자담보책임 및 보증)

- ① 본 계약에 의해 “협력사”가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CJ”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하자과 관련하여 “협력사”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② "협력사"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인도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단, "협력사"의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이 1 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CJ"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 년으로 한다.
- ③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에 제품상의 하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교환,환불)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CJ"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협력사"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협력사"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는 "CJ"가 의뢰한 고객불만에 대한 처리지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협력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담보(이행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포함)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CJ"의 고객이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등)을 의뢰할 경우 "협력사"는 7 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력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CJ"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소용 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하거나 "협력사"에게 지급할 상품의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⑥ "협력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하자보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예상될 때 "협력사"는 "협력사"의 하자보증기간내 판매누적대금 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CJ"는 별도의 계약없이 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CJ"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의 판매대금 중 하자보증기간내 판매누적대금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단, "CJ"는 전항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해소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협력사" 또는 "협력사"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상품관리)

"협력사"가 "CJ"의 주문에 따라 "CJ"에게 입고 완료한 상품의 파손, 멸실 등에 따른 위험은 "CJ"가 부담한다.

제 14 조 (상품의 반품)

- ① "CJ"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 받은 상품에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CJ"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 : (반품기한은 행사종료로부터 1 개월 이내로 하되, 반품 수량과 비용 등의 기타 사항은 개별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 반품조건 : 반품기한, 반품수량의 상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

5. 신·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협력사"가 자기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경우, "협력사"는 해당 반품이 자기에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CJ"에게 제출한다.
 6. 기타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반품기간은 납품일로부터 6 개월 이내로 한다. 단, 납품일에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고객에게 배송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신선농·수·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CJ”가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 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반품할 수 있다.
- ④ “CJ”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판매장려금)

- ① “CJ”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협력사”와 별도 서면 약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명칭	종류	지급목적	지급시기	지급횟수	판매장려금률(액)
판매 인센티브	(예시) 성과장려금	“CJ”가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매 시 판매독려	성과 달성 시	연 ()회	초과판매액의 ()%

- ② 제 1 항의 판매장려금률(액)은 결정기준·결정절차 및 변경사유·변경기준·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 결정기준 및 변경기준 - “CJ”와 “협력사”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기간, “CJ”의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기재 ※ 결정절차 및 변경절차 - 담당 MD 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절차, 협의 불성립 시 재협의절차, 결정된 판매장려금 수준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기재 ※ 변경사유 -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인상/인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

- ③ “CJ”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협력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협력사”에게 제 1 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CJ”는 “협력사”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판촉행사약정서”라 한다)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목록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CJ”와 “협력사”가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 ② “CJ”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게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협력사”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제 5 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CJ”와 “협력사”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CJ”와 “협력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제 3 항에 따른 “협력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협력사”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CJ”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CJ”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협력사”를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협력사”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제 5 항과 마찬가지로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가능

제 17 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CJ”는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협력사”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6. “CJ”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제 18 조 (양품화 업무)

- ① 고객의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상품을 “CJ”가 판매할 수 없는 경우, “CJ”는 제 3 자 또는 “협력사”에게 이를 다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수리 등의 업무(이하 “양품화”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양품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CJ”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의 특성상 제 3 자가 양품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력사에서 이를 수행하되 구체적인 양품화 비용은 양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정하거나, 향후 양품화 예상비용을 포함하여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손해 배상)

- ① “CJ”와 “협력사”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CJ”가 소비자,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협력사”는 “CJ”를 방어하고 면책 시키며 일체의 피해,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③ “협력사”의 임직원, 상담원 및 “협력사”가 지정한 배송회사 직원의 “CJ”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CJ”가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력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 “협력사”가 본 계약서 제 14 조 후단에 위반하여 고객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협력사”는 “CJ”에게 제 1 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 사유발생직전 6 개월 평균 월 상품판매대금의 50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적재산권 등)

- ① “협력사”가 “CJ”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이하 “산업재산권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협력사”는 “협력사”의 권리를 입증하는 관련자료를 “CJ”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CJ”의 귀책사유없이 “CJ”에게 책임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합리적인 범위내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및 민,형사 등 모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CJ”는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지적재산권 등에는 “CJ”가 방송, 카탈로그,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 본 상품관련 상표, 로고, 휘장 등을 제한없이 표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③ "CJ"는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가처분, 가압류, 행정처분 및 기타 민,형사 등의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 "협력사"는 관련자료의 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CJ"가 제작, 방송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CJ"에게 있으며 "협력사"는 "CJ"가 사전에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저작물을 사업목적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상표관련특약)

- ① “협력사”는 “CJ”에게 “협력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CJ”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 3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 ② “협력사”는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협력사”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CJ”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는 “CJ”, “CJ”의 고객 및 제 3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 22 조 (제조물책임)

“협력사”는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CJ”의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협력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CJ”의 고객 또는 제 3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 23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협력사”는 “CJ”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CJ"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있다.

제 24 조 (유효 기간)

본 계약은 말미에 기재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단, "CJ"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계약변경, 해약, 기타 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5 조 (의견의 조정)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 취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6 조 (통지의무)

- ① “CJ”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제 1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 구성이나 대주주, 경영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기타 "협력사"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 27 조 (비밀유지)

- ① “CJ”와 “협력사”는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 1 항의 의무는 “CJ”와 “협력사”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1 년간 계속된다.

제 28 조 (계약해지)

- ① “CJ”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CJ” 또는 “협력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CJ” 또는 “협력사”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CJ” 또는 “협력사”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CJ”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협력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CJ” 또는 “협력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9 조 (상계)

제 28 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 30 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

- ① 이 계약은 말미에 기재한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CJ” 또는 “협력사”가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③ “CJ”는 “협력사”와 “협력사”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력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CJ”는 위 ③항을 포함한 “협력사”와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CJ”가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협력사”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CJ”와 “협력사”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CJ”와 “협력사”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CJ”와 “협력사”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CJ”와 “협력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 32 조 (계약의 효력)

- ① “CJ”와 “협력사”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CJ”와 “협력사”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CJ”와 “협력사”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CJ”와 “협력사”가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XX 년 XX 월 XX 일

“CJ”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대표이사 윤 상 현 (인)

“협력사”

(인)